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 사항

어떤 경우에 이 양식을 받게 되나요?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세입자로 인정될 때, 임차 계약 종료 전 되거나 또는 종료 통지를 받을 때, 또는 귀하의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점유권 통지서(양식 HUD-5380) 및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증명서(양식 HUD-5382)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제공자는 추가 시간에 이와 같은 양식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이란? 이 고지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VAWA")이라는 연방법이 적용되는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자 또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호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VAWA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 보호를 제공합니다. VAWA 보호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기타 프로그램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AWA 보호 사항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VAWA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참여 중이거나 신청 중인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정보를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읽으려면 해당 주택국 사무소로 문의하거나(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문의 5페이지 참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kcha.org/vawa>. VAWA 번역 양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administration/hudclips/forms/hud5a#4. 귀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읽는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VAWA 보호와 관련하여 언어 지원(예: 구두 통역 및/또는 서면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안내문의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여성폭력방지법(VAWA) 폭력/학대**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중 하나 이상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란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VAWA 폭력/학대의 모든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 **관계인**은 세입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녀, 또는 세입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개인, 임차인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 또는 세입자가 부모/후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장 대상 주택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주택도시개발부(HUD)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공공 주택
 - 세입자 기반 바우처(TBV, 주택 선택 바우처 또는 HCV라고도 함) 및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PBV) 섹션 8 프로그램
 - 섹션 8 프로젝트 기반 임대 보조(PBRA)
 - 섹션 8 중증 재활 싱글룸 거주
 - 섹션 202 고령자를 위한 지원 주택
 - 섹션 811 장애인을 위한 지원 주택
 - 섹션 221(d)(3)/(d)(5) 다가구 임대 주택
 - 섹션 236 다가구 임대 주택
 -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HOPWA)
 - 홈 투자 파트너십 (HOME) 프로그램
 - 주택 신탁 기금
 - 긴급 솔루션 보조금(ESG) 프로그램
 - 케어 프로그램 연속체
 - 농촌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¹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따라 HUD가 보장하지 않는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폭력방지법의 주택 조항에 관한 기관 간 성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ud.gov/sites/dfiles/PA/documents/InteragencyVAWAHousingStmnt092024.pdf>.

◦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란 특정 상황에서 VAWA 보호를 제공하거나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장 대상주택 프로그램에 속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 제공자는 공공 주택 기관, 프로젝트 후원자, 주택 소유자, 저당권자, 주택 관리자, 주 또는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또는 임대인으로서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VAWA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지원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현재 또는 과거의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VAWA가 보장하는 주택, 주택 지원 또는 노숙자 지원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또는 신용 기록이 좋지 않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이 VAWA 학대/폭력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해당 기록은 VAWA가 적용되는 주택 또는 노숙자 지원을 거부하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VAWA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세입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VAWA 폭력/학대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VAWA가 보장하는 주택, 주택 지원 또는 노숙자 지원을 잃거나 되거당할 수 없습니다.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현재 또는 과거의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VAWA가 보장하는 주택, 주택 지원 또는 노숙자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되거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반복적인 소음 민원과 재산 피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VAWA 학대/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소음 민원이나 재산 피해는 VAWA가 적용되는 주택에서 퇴거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관계인에 대한 VAWA 학대/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해 VAWA가 적용되는 주택, 주택 지원 또는 노숙자 지원에서 퇴거 또는 퇴거 조치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긴급 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VAWA 폭력/학대 피해자는 VAWA 폭력/학대와 관련된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거주 유닛에서 다른 유닛으로 긴급 이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긴급 이사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긴급 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또는 가구 구성원)이 VAWA 폭력/학대의 피해자인 경우;
2. 본인이 긴급 이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그리고**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본인(또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주거 공간에 머무는 경우 트라우마를 포함한 추가 폭력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의 위협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 b. 본인(또는 가족 구성원)이 성폭행의 피해자인 경우, 본인(또는 가족 구성원)이 숙소에서 계속 머물 경우 트라우마를 포함한 추가 폭력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의 위협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집에서 성폭행이 발생했고 해당 폭행이 발생한날로부터 90일(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긴급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임대료가 밀린 경우와 같이 임대 계약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긴급 이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귀하의 요청, 요청을 위해 제공한 정보, 새 숙소의 위치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 제공자는 VAWA 긴급 이사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 이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주택 제공자의 VAWA 긴급 이사 계획을 확인하려면 해당 주택국 사무소에 문의하거나(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문 5페이지 참조), 택 다음 링크의 해당 정책 문서에서 “긴급 이사”를 검색하십시오: www.kcha.org/about/policies VAWA 긴급 이사 계획에는 해당 주택 제공자가 귀하의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임대 계약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특정 상황에 따라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임대 계약을 분할하여 가해자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 분할”이라 부릅니다.

임대 분할로 인해 주택이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세입자였던 가해자가 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와 나머지 가구원에게 자격을 입증하거나 다른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을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다른 보장 대상 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거나 이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해당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HUD의 각 보장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장 대상 주택 프로그램의 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보장 대상 주택 프로그램(들)	남은 가구 구성원이 지원을 계속 받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이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HOME 및 주택 신탁 기금, 케어 프로그램 연속체(영구 지원 주택 제외), ESG 프로그램, 섹션 221(d)(3) 프로그램, 섹션 221(d)(5) 프로그램, 농촌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주택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CoC 프로그램의 나머지 세입자 또는 가족 구성원은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계속 받거나 지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케어 프로그램 연속체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영구 지원 주택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퇴거할 때 나머지 가구 구성원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및 공공 주택 프로그램 (특수 목적 바우처 (예: HUD-VASH, FUP, FYI, 등등.), 프로그램 특정 안내 또한 참조)	퇴거된 사람이 적격 시민권/이민 신분을 취득한 유일한 세입자인 경우, 나머지 가구 구성원에게는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임대 분할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HUD-VASH의 경우, 재향군인이 퇴거하더라도 남은 가족 구성원은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계속 받거나 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이 적격 시민권/이민 신분을 취득한 유일한 세입자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프로그램 자격을 입증하거나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섹션 202/811 PRAC 및 SPRAC	임대 분할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섹션 202/8	임대 분할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나머지 가구 구성원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퇴거된 사람이 적격 시민권/이민 신분을 취득한 유일한 세입자인 경우, 나머지 가구 구성원에게는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임대 분할일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섹션 236 (RAP선 포함); 프로젝트 기반 섹션 선8 및 중증 재활/SRO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 분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HOPWA	나머지 가구원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거나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날짜는 HOPWA 수혜자 또는 프로젝트 후원자가 정합니다.
-------	--

내가 퇴거당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VAWA는 임대 계약 위반, 프로그램 위반, 귀하 또는 관인에게 가해진 VAWA 폭력/학대로 인한 것이 아닌 기타 요건 위반으로 인한 퇴거 또는 지원금 상실을 방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이 VAWA 학대/폭력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입자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퇴거되지 않거나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세입자나 주택 직원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신체적인 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VAWA는 퇴거, 해지 또는 제거를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VAWA 학대/폭력이 귀하 또는 관련인에게 발생한 경우,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 제공자가 귀하를 퇴거시키거나 지원을 종료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임대 계약 종료 전 퇴거 또는 종료 통지를 받게 될 때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점유권 통지서(양식 HUD-5380) 및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증명서(양식 HUD-5382)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VAWA 학대/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VAWA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 제공자는 이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귀하는 최소 영업일 기준 14일(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주택 제공자가 이 고지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자체 인증 양식(예: 양식 HUD 5382). 본인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2. VAWA 폭력/학대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피해자/생존자 서비스 제공자, 변호사,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 전문가는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VAWA 폭력/학대 사건이 실제이며 VAWA의 적용을 받는다고 믿는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과 전문가 모두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3. 본인(또는 가족 구성원)이 VAWA 폭력/학대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경찰, 행정 또는 법원 기록(예: 보호 명령서)입니다; 또는
4.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허용하는 경우, 귀하가 제공하는 기타 진술 또는 증거.

어떤 문서를 제공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제공자는 위의 문서 중 하나를 수락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VAWA 폭력/학대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를 받지 않는 한,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피해자 상태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유형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러한 유형의 문서 중 하나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요청한 VAWA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접수한 서류에 VAWA 폭력/학대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위 목록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30일의 추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나요?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와 VAWA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공유하는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세입자 파일과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보장 대상 주택 제공업체가 해당 이유로 명시적으로 접근을 승인하며, 해당 승인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주택 제공업자에 제한된 기간 동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허가하는 경우;
2. 해당 주택 제공자가 퇴거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3.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 제공자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다른 법률은? VAWA는 해당 주택 제공자가 부동산에 대한 접근 또는 통제에 관한 법원 명령 또는 VAWA 학대/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부된 민사 보호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VAWA는 가족 해체 중 가구 구성원 간의 재산 분배 또는 소유와 관련하여 법원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해당 주택 제공자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 제공자는 모든 공정 주택 및 민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리적 편의 요청이 가능합니까? 장애가 있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VAWA 보호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예: 서류 제출 시간 연장 또는 양식 작성 지원). 퇴거가 진행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합리적 편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먼저 귀하와 대화 절차를 거쳐 가능한 대체 편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합리적 편의를 요청하려면 주택 당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문 5페이지 참조). 또한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장애인 개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VAWA에 따른 보호가 거부되었나요? 해당 주택 제공자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HUD의 워싱턴주 공정 주택 및 기회 균등(FHEO) 사무소에 (206) 220-5170번 또는 다음의 무료 전화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00) 877-0246. VAWA 불만 접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VAWA> 및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opp/VAWA. VAWA 불만을 접수하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hud.gov/fairhousing/fileacomplaint>.

추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VAWA 추가 정보 및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hud.gov/vawa>.

주택 애드버킷과 이야기 나누시려면 아래에 연락하십시오:

- 전국 가정 폭력 상담전화 (주7일 24시간): www.thehotline.org를 방문하거나
 - 1-800-799-7233(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전화, 1-800-787-3224 (TTY))으로 전화하십시오.
 - 88788 번으로 START라는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 CLEAR 는(조정된 법률 교육, 자문 및 추천) www.nwjustice.org/clear-hotline 또는
 - 킹카운티 내부: 2-1-1 (주중)
 - 킹카운티 외부지역 (Skagit & Thurston 포함): 1-888-201-1014 (주중)
 -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까? 1-855-657-8387로 전화하십시오.
- 킹카운티 성폭력 지원 센터: www.kcsarc.org 또는 1-888-998-6423
- 스카짓 가정폭력 & 성폭력 지원 서비스: www.skagitdvs.org 또는 1-888-336-9591 (24/7)

주택국 사무소 연락처 정보

**KCHA의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귀하의 주택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kcha.org/contact/
section-8](https://www.kcha.org/contact/section-8)

또는 (206) 214-1300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가 킹카운티 주택국(KCHA)

건물에 살고 있다면:

해당 건물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cha.org/contact/o
ffices](https://www.kcha.org/contact/offices))

귀하가 세드로-울리(Sedro-Woolley)

건물에 살고 있다면:

해당 건물 관리 사무소

(206) 574-1243 또는

BallingerHomesOffice@kcha.org

**만약 주택국 건물로의
입주가 거부되었다면:**

중앙 신청국

(206) 574-1248 또는

[CentralApplications@kch
a.org](mailto:CentralApplications@kcha.org)

이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개 보고 부담**은 프로그램에 따라 각 해당 주택 제공자의 응답 당 45분에서 9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간에는 양식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처리 절차 시간 추정치의 정확성에 관한 의견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제안은 아래의 주소로 주택 및 도시 개발부, QDAM, 보고서 관리 담당관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51 7th Street, SW, Washington, D.C. 20410. 이 고지는 VAWA 41411조 및 24 CFR 5.2003에 따라 보장되는 주택 프로그램에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 제공자는 이 고지를 신청자와 세입자에게 제공하여 섹션 41411(d)(2)에 명시된 대로 VAWA 보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범 고지이며 어떠한 정보도 수집되지 않습니다. 연방 기관은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현재 유효한 관리 및 예산 통제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귀하는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에 대한 인증**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이 양식에서 공유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아래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관리합니다.

양식의 목적: 보장 대상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신청자이거나 해당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과도기 주택 또는 임대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당 해당 주택 제공자의 ‘피해자’ 신분에 대한 서면 문서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점유권 고지”(HUD-5380 양식)가 첨부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나이,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및 가족을 보호합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점유권 고지”(양식 HUD-5380)에 명시된 것 외에는 피해자 신분 또는 VAWA 폭력/학대를 주장, 문서화 또는 증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은 해당 주택 제공자의 피해자 상태 또는 VAWA 폭력/학대 사건에 대한 서면 문서 요청에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원하는 경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양식 HUD-5380에 설명된 제3자 문서 유형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이 문서에 대한 서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소 영업일 기준 14일(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음)의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나요? 귀하가 VAWA 보호를 요청할 때마다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이 양식의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가 VAWA 폭력/학대 또는 피해자라는 사실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세입자 파일과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1) 특정 사유로 인해 접근이 필요한 경우, (2) 해당 사유로 인해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해당 직원의 접근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그리고** (3) 해당 승인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 제공업체의 직원/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가 (1) 한시적으로 귀하의 서면 허가를 받거나 (2) 퇴거 또는 해지 청문회의 일환으로 요구되거나 **또는** (3)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또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VAWA 폭력/학대를 저지르거나 위협한 사람에게 귀하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정보를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읽으려면 해당 주택국 사무소로 문의하거나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kcha.org/vawa>. VAWA 번역 양식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administration/hudclips/forms/hud5a#4. 귀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말하거나 글을 읽는 경우, 해당 주택 제공자는 VAWA 보호와 관련하여 언어 지원(예: 구두 통역 및/또는 서면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 편의 요청이 가능합니까? 장애가 있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귀하가 VAWA 보호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예: 서류 제출 시간 연장 또는 양식 작성 지원). 퇴거가 진행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 합리적 편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먼저 귀하와 대화 절차를 거쳐 가능한 대체 편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는 장애인 개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VAWA 추가 정보 및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hud.gov/vawa>. 주택 애드버킷과 이야기 나누시려면 아래에 연락하십시오:

- 전국 가정 폭력 상담전화 (주7일 24시간): www.thehotline.org를 방문하거나
 - 1-800-799-7233(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전화, 1-800-787-3224 (TTY))으로 전화주십시오.
 - 88788 번으로 START라는 문자를 보내 주십시오.
- CLEAR 는(조정된 법률 교육, 자문 및 추천) www.nwjustice.org/clear-hotline 또는
 - 킹카운티 내부: 2-1-1 (주중)
 - 킹카운티 외부지역 (Skagit & Thurston 포함): 1-888-201-1014 (주중)
 -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까? 1-855-657-8387로 전화주십시오.
- 킹카운티 성폭력 지원 센터: www.kcsarc.org 또는 1-888-998-6423
- 스카깃 가정폭력 & 성폭력 지원 서비스: www.skagitdvs.org 또는 1-888-336-9591 (24/7)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1. 피해자(들)의 이름(들): _____

2. 작성자의 이름 (*피해자가 아닌 경우*): _____

3.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들): _____

4. 가해자의 이름 (*알려져 있고 공개해도 안전한 경우*): _____

5. 가장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 이상을 선택해도 됩니다.)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거나 더 이상 안전한 연락 수단이 아닌 경우, 보장 대상 주택 제공자에 알려주세요.

☐ 전화 전화번호: _____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안전합니까: ☐ 예 ☐ 아니오

☐ 이메일 이메일 주소: _____

이메일을 받아도 안전합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 우편 주소: _____
주택 제공자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도 안전합니까: ☐ 예 ☐ 아니오
☐ 기타 방법 기타 방법 기재: _____

6. 귀하와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주택 제공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관련 용어의 정의:

가정 폭력에는 관할 지역의 가정폭력 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현재 또는 전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피해자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사람, 피해자와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로서 동거하거나 동거했던 사람, 피해자의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 기타 사람이 해당 사람의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성인 또는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중범죄 또는 경범죄의 폭력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는 관계의 기간, 관계의 유형 및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 빈도에 따라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아래와 같은 사람이 저지른 폭력을 의미합니다:

- (1) 피해자와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사람; **그리고**
- (2) 그러한 관계의 존재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i) 관계의 기간, (ii) 관계의 유형, (iii) 관계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 빈도.

성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법, 부족법 또는 주법에 의해 금지된 모든 비합의적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개인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또는**
- (2) 상당한 정서적 고통.

신청자 또는 세입자의 인증: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본인이 알고 기억하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위의 해당 정의에 설명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날짜

이러한 정보 수집에 대한 **공개 보고 부담**은 응답당 평균 20분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를 수집, 검토, 보고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처리 절차 시간 추정치의 정확성에 관한 의견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제안은 아래의 주소로 주택 및 도시 개발부, QDAM, 보고서 관리 담당관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51 7th Street, SW, Washington, D.C. 20410. VAWA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주택 제공자는 신청자 또는 세입자가

VAWA 폭력/학대 피해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기관은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현재 유효한 관리 및 예산 통제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귀하는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